

# 「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8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3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환경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현행 조례 시행 이후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, 상시개방화장실의 개방 예외 사유를 마련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, 군수 및 설치·관리자의 책무(안 제1조~제4조)
- 나. 안전관리시설 설치 및 관리 항목 추가(안 제4조의2~제4조의3)
- 다.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및 유지·관리기준 규정(안 제7조, 제9조)
- 라. 개방화장실의 상시개방 적용 예외 사유 마련(안 제10조)
- 마. 별지 및 별표 수정사항 반영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‘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’을 위해

「공중화장실법 등에 관한 법률」 및 이하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 
상위법 위임 및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,

주요내용으로는,

공중화장실의 정의를 관련 법을 준용하여 명확히 하고,  
안전관리시설 설치, 신고체계 마련, 관리인의 교육,  
개방화장실 지정 및 개방시간 범위 등의 조문을 신설하여  
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힘쓰도록 함.

검토결과,

우리 군의 조례를 상위법 개정 취지에 따라 부합하게 하고,  
조문의 표현을 다듬어 가독성을 높이는 등  
전반적인 재정비를 위하여 조례 전문을 개정하는 것으로,  
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등이 없으므로  
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